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267

발의연월일: 2020. 7. 22.

발 의 자: 박덕흠·김태흠·김기현

권명호 · 김석기 · 김용판

추경호・박성중・홍문표

강기유 · 백종헌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지원단지 및 인접단지에 공공임대주택(이하 "산업단지형 행 복주택")을 건설하여 산업단지 근로자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산업단지 근로자가 해당 주택을 공급 받기 위해서는 일정 소득 요건, 자산 요건을 갖추고 "무주택자"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일부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위치한 산업단지의 경우 근로자의 대부분이 "무주택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에 입주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수도권에 위치하지 아니한 산업단지 등의 근로자의 경우에는 "무주택자"가 아니더라도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입

주 요건을 완화하여,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을 목적대로 활용하면서 단기간 근무지 이전으로 주거에 어려움을 겪는 산업단지 근로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3항 신설).

법률 제 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입주자의 자격 등에도 불구하고 공공주택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무주택자 또는 무주택세 대구성원이 아닌 자를 공공주택의 입주자로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주택 입주자의 자격, 선정 방법 및 입주자 관리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같은 법 제46조의2제2항에 따른 지원단지, 이와 인접한 지역 및 연접지역에 입주 또는 입주예정인 기업 및 교육·연구기관(이하이 항에서 "기업등"이라 한다)의 근로자일 것
- 2. 기업등이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입주 또는 입주예정일 것
- 3. 기업등에 1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1년 이상 근무 예정인 근로자일 것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8조(공공주택의	공급) ①・②	제48조(공공주택의 공급) ①・②
(생 략)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③ 제1항에 따른 입주자의 자
		격 등에도 불구하고 공공주택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무주택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자를 공공주택의 입주자로 선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주
		택 입주자의 자격, 선정 방법
		및 입주자 관리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
		업단지 또는 같은 법 제46조
		의2제2항에 따른 지원단지,
		이와 인접한 지역 및 연접지
		역에 입주 또는 입주예정인
		<u>기업 및 교육·연구기관(이하</u>
		이 항에서 "기업등"이라 한
		다)의 근로자일 것
		2. 기업등이 수도권이 아닌 지
		역에 입주 또는 입주예정일

것3. 기업등에 1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1년 이상 근무 예정인근로자일 것